

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은

도내 특성화고 졸업(예정)자와 현장실습 선도기업간 일자리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**[2022년 고졸자-선도 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]**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

참여기업 모집공고 (5월)

- 도·시군 홈페이지 및 사업 홈페이지(gnjobs.kr)

참여희망기업 청년 채용 및 사업 신청 (5월~6월)

- 참여희망기업 청년공개채용 • 참여신청 : 온라인 신청

신청기업 평가 (6월)

- 신청기업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

지원대상기업 선발 (6월)

- 지원기업 최종 선발 - 선정업체 개별 알림

사업운영 및 관리 (6월~12월)

- 청년인건비 지원 • 청년직무 교육

희망 사다리 일자리 사업

참여기업 모집공고

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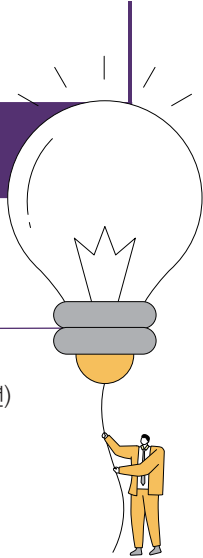
(재)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
사업신청 및 기타문의 ☎ 055-230-2921
사업추진 및 일정문의 ☎ 055-212-6772

공고문 확인 경로

(재)경상남도경제진흥원 www.gnepa.or.kr
※ 지원사업안내(홈페이지 왼쪽상단 메뉴) ▶ 사업공고 페이지
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gnjobs.kr
경상남도 및 창원시청·사천시청·함안군청 홈페이지



사업개요



지원내용

인건비 지원

- 기업별 최대 2명(만15세 ~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)
- 청년 1인당 최대 월 180만원 (월 200만원의 90%,기업부담 10%)

근로자 지원

- 직무교육 및 노무상담 등 직무적응 지원
- 청년 인센티브 지원(참여 사업장에 2년 기간 동안 재직시)

참여가능기업

창원, 사천, 함안에 소재한 현장실습 선도기업

「현장실습 선도기업」이란,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선도기업 요건(현장실습 훈련시간, 실습여건 및 고용환경, 일정 규모의 근로자 재직 등)을 충족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'현장실습 선도기업 확인증'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의미

도내 특성화고 졸업(예정)자를 채용한 현장실습 선도기업

- 22. 1.1.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
- 최초 모집공고일 22.2.21.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지원불가

참여청년 지원인원

15명(기업당 2명 이내)

- 창원시 10명, 사천시 2명, 함안군 3명

참여기업 선정방법

선정기준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및 현장 확인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

평가방법 정량적 평가(70점), 정성적 평가(30점), 가점

평가항목 경영상태, 매출액, 월급여, 청년 관리계획 등

신청서류 및 접수

신청기간

2022. 5. 19.(목) ~ 2022. 6. 3.(금), 24:00 까지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(gnjobs.kr)

※ 아래의 제출서류는 연번 순서에 따라 개별 PDF파일 (파일명은 제출서류명)과 통합 PDF파일(파일명은 기업명) 함께 첨부

신청서류

참여기업이 아래의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함

※ 아래의 제출서류는 연번 순서에 따라 개별 PDF파일 참여기업 관련 제출서류(1~13번), 채용청년 관련 증빙서류(14~19번)

번호	제출서류명	비고
1	사업 참여신청서	[공고문 붙임]
2	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	기업 및 임직원(공고문 붙임)
3	사업자등록증	-
4	법인등기부등본	법인에 한함
5	현장실습 선도기업 확인증	경상남도교육청 발급본
6	대표, 임원 가족관계증명서	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본
7	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
8	4대 보험료,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	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
9	재무제표(2020년 ~ 2021년)	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[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] 제출
10	산업재해율확인서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본
11	공개채용 증빙서류	워크넷 구인등록신청 증빙 및 채용공고 증빙
12	청년관리계획서 및 기업소개자료	[공고문 붙임]
13	기타 가산점 부여 증빙서류	공공기관 인증기업 확인서 등
14	근로계약서	모집공고일 이후 신규채용, [공고문 붙임]
15	고등학교졸업(예정)증명서	본인 발급본
16	청년 주민등록초본	모집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본(주소변경)력 포함)
17	청년 가족관계증명서	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본
18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
19	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	채용 참여청년(공고문 붙임)

신청시 유의사항

- 01 채용된 청년의 급여는 세전으로 2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
-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제외
- 02 선정된 기업 및 채용된 청년은 해당 지자체(모집 시군)에 주소(주민등록)를 유지하여야 하며 타 지역일 경우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이전하여야 한다.
- 03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참여신청을 한 경우에도 선정평가 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다.
- 04 인건비는 매월 지원하며, 중도 퇴사한 경우 재직(근무)일수 기준으로 *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- 일할계산법 : (지원금 ÷ 해당 월의 역산 일수) × 재직(근무)일수
- 05 인건비 청구시 제출서류
- 참여기업: 인건비 지원 신청서, 근무상황부, 급여이체 내역서,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, 인건비 입금통장(기업체) 사본
- 참여청년: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
- 06 참여청년이 취업한 참여기업이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※ 채용일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
- 07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한다.
- 08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및 지원제외를 조치한다.

경고

- 참여기업 또는 청년이 수행기관 주관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
- 참여기업 또는 청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모집 시군에 주소(주민등록)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
-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
지원제외

-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
- 경고조치를 2회 받은 경우
-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정수급,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, 지원 위반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참여사업장 또는 청년이 주소(주민등록) 이전을 통지받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
- 대체 참여청년을 30일 이내 채용하지 못한 기업
- 참여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(2회 발생시 제외)
-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기업

